

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
(경유)

제목 공유재산(유어스빌딩 4,5층) 사용료 고지서 송부

1. 서울시 문화융합경제과 - 1127(2016. 2. 1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』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(2016.2.29.)내 납부하여 주시고, 공유재산 사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소재지 : 유어스(U:US)빌딩(중구 마장로 22)4, 5층

나. 부과기간 : 2016. 3. 1 ~ 2017. 2.28

다. 부과금액 : 금130,747,430원

- 사용료 : 118,861,300원, 부가세 : 11,886,130원

라. 부과내역 :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에 의거 감면
- 118,861,300 = 106,887,360 +
5,344,368 + [134,330,300 - (106,887,360 + 5,344,368)]
× 0.3

전년도사용료 + 전년도
도의 5% 증가액 + [금년도 감액전사용료-(전년도사용료+
전년도의 5% 증가액)] × 0.3

※ 2016년 감면전 사용료 : 134,330,300원

· 건물 : 43,179,660원(5,465.78㎡×790,000원(건물평가액)×10/1000(사용요율)

· 대지 : 91,150,640원(778.40㎡×11,710,000원('15년 공시지가)×10/1000(사용요율)

붙임 : 납부고지서 및 세금계산서(별송) 각 1부. 끝.



★주무관 **설정환** 패션산업팀장 **박재민** 문화융합경제과장 **곽종빈** 02/02

협조자

시행 문화융합경제과-1181 (2016.02.02.) 접수 봉제산업팀-232 (2016.02.02.)

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/

전화 /전송 / / 대시민공개